정 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 제2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가 산동 685번지) 디지털엠파이어 1509호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협회는 회원사의 환경기술 지원 및 교류,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교육 등으로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오염물질 저감 배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환경오염방지시설 진단·개선 및 기술지도·보급 등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업
 - 2.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 3.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
 - 4. 기술서적, 환경관련법규 등의 발행, 보급 및 회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 5.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 6. 연구발표회, 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7.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부설기관)

- 1.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교육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설 기관 또는 별도의 법인을 둘 수 있다.
- 2. 부설기관 또는 법인의 조직 구성은 별도규정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 제6조(회원) 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며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자(업체)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 회 원 : ① 전국의 지역환경기술인협회의 소속 회원
 - ②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산업체 대표 및 직원
 - ③ 환경오염방지 신기술을 개발한 연구기관 및 연구원
 - 2.준 회 원 : 정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환경산업체 및 소속직원, 학교도서 관. 단체 등의 전국의 환경인
 - 3. 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협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 2. 환경기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보전
 -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신상변동에 따른 신고 등
- 제8조(입회)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제6조(1항 1호 제외)에 해당되는 단체 또는 개인, 법인, 타단체는 본 협회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1항 1호에 해당되는 환경기술인 및 단체는 지역협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상실) 다음 각호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인의 사망 또는 탈퇴
- 2. 지역환경기술인협회의 탈퇴
- 3. 협회의 제명결정

제10조(제명) 회원이 협회의 명예훼손, 재산손해, 회비불이행 등 정관을 위반 할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교육) ①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수 있다.

② 회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각호에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28인 이내로 하되, 부회장 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3. 이사는 20인 이내로 하되, 이사 중 1인을 상근으로 할 수 있다.
- 4. 감사는 2인으로 하되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장,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결원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협회의 임원선출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인준을 받는다.

2. 임원결원시 결원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협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 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의 재산상황 감사
 - (2) 협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4)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4.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협회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을 보좌한다.
- 5. 회장, 부회장,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전문위원)

- 1. 협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 3. 전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회)

- 1. 전문위원회는 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과 전문지식 보급 및 습득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2.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고문) 협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9조(명예회장)

1.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지역협회장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회장이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의결) 의결은 다음의 항과 같다.

- 1. 총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 2.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대의원 3인 이상 의 서명날인 후에 이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의 1(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역협회별 총회에서 선출 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회별 대의원 정수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 제24조(위임권) 총회의 의결권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5.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 7. 기타 법령상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한다.
- 제27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이사 과 반수로 의결한다.
- 제28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2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9조(위임권) 이사회의 의결권은 의장에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
-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5.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 6. 전문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부의할 사항
- 8. 결원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
- 9.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10. 회비에 관한 사항
- 11. 지역협회 설치 및 해산과 지역협회장 해임 사항
-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지역협회 해산과 지역협회장 해임 사항)

- 1. 지역협회 해산 -다음 항에 해당되는 지역협회는 사무국에서 사전조사 후 이사회에 부의
- (1) 지원금, 도서구입비용 및 기타 비용 장기미납 지역협회
- (2) 총회 결산서 미제출 지역협회
- 2. 지역협회장 해임 사항
- (1) 본 협회 및 지역협회 명예를 훼손한 자
- (2) 징계 및 형사처벌 사항을 받은 자

제32조(의결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이사 전원의 서명날 인이 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33조(사무국)

- 1.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본회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2. 사무국의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사무총(국)장 및 직원)

- 1. 사무총(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직원은 사무총(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5조(사무총(국)장의 임무) 사무총(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임무를 행한다.

- 1. 총회, 이사회,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처리
- 2. 직원의 지휘감독
- 3. 기타 본 협회의 통상업무처리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재정)

- 1.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2) 광고비
 - (3) 찬조 및 기부금
 - (4) 구독료
 - (5) 지원금
 - (6) 정부출연금

(7) 기타 수입

제37조(찬조 및 기부금)

- 1. 협회와 관련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 2. 기부금 납입 및 지출내역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8조(예산결산)

- 1. 사업회계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2. 매회계년도 사업계획과 회계이전년도의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 및 업무 실적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총회에 보 고하고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부터 당해년 12월말까지로 한다.
- **제40조(회계사무)** 이 정관에 규정한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에 준한다.
- 제41조(기록보존) 협회는 회계처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재정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보 칙

- 제42조(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 제43조(해산)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4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협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증한다.

제45조(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1/2이 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47조(제규정 운영) 협회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제·개정 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 1999. 2. 21

2차 개정 : 2002. 2. 19

3차 개정 : 2001. 2. 17

4차 개정 : 2002. 2. 23

5차 개정 : 2003. 2. 22

6차 개정 : 2006. 2. 23

7차 개정 : 2012. 2. 24

8차 개정 : 2014. 2. 21

9차 개정 : 2018. 6. 19

10차 개정 : 2021. 2. 4